



**한국ESG기준원**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

#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

**2026. 2.**

**한국ESG기준원**

##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주요 신구대조표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제정배경 및 목적]</b> 한국ESG기준원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회사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p> <p><b>[원칙]</b> 기업의 장기적인 회사가치 제고</p> <p><b>[규정 범위]</b> 둘째, 이 가이드라인이 공론화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u>회사가치의 제고</u>라는 기본원칙상 (중략)</p>	<p><b>[제·개정배경 및 목적]</b> 한국ESG기준원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회사가치 <u>및 주주권의 제고</u>에 기여하고자 한다.</p> <p><b>[원칙]</b> 기업의 장기적인 회사가치 <u>및 주주권의 제고</u></p> <p><b>[규정 범위]</b> 둘째, 이 가이드라인이 공론화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u>회사가치 및 주주권의 제고</u>라는 기본원칙상 (중략)</p>	<p>-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일러두기]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가이드라인 각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외에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사실상 이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li> </ul> <p>(신설)</p>	<p>[일러두기]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외에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사실상 이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특수관계인</u>’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계열회사</u>’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공개</u>’는 관련 법규에 따른 ‘<u>공시</u>’를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독립이사</u>’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2026. 7. 23.) 전까지 ‘<u>사외이사</u>’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용어 정비 적용시점을 명시</li> <li>기타 자구 수정</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p> <p>2. <u>감사위원회</u></p> <p>2.2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의 <u>사외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p>	<p>1. <u>이사회 및 감사기구</u></p> <p>3. <u>감사기구</u></p> <p>3.2 (감사위원회 독립이사 비중) <u>감사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방안</u>에 찬성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li> <li>- 전원 독립이사를 원칙으로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li> </ul>
변경 · 보완	<p>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p> <p>3. <u>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u></p> <p>3.3 (사외이사 구성 비율) <u>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p>	<p>1. <u>이사회 및 감사기구</u></p> <p>2. <u>이사회 내 위원회</u></p> <p>2.3 (이사회 내 위원회 독립성) <u>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을 독립이사로,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li> </ul>
삭제	<p>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p> <p>4.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p> <p>4.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li> </ul>
삭제	<p>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p> <p>4.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p> <p>4.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u>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5. 보상위원회</u>            5.1 (보상위원회 위원 구성) 보상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6. 내부거래위원회</u>            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상법에 따라 규제되는 이사, 주요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이하 총칭하여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개정안 I-2.3이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를 전제로 하도록 개정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6. 내부거래위원회</u>            6.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구성)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삭제	<p><u>II. 이사·감사</u>            2. 사외이사            2.3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삭제)	- 개정 전 II-6.3과 통합하여 개정안 I-5.8 확대 정비
변경 · 보완	<p><u>II. 이사·감사</u>            5. 집행임원            5.1 (집행임원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7. 집행임원            7.1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폐지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시·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집행임원제도 폐지에 대한 판단 기준 추가</li> </ul>
자구 수정	<p><u>II. 이사·감사</u>            6. 이사 선임            6.1 (이사 후보 투표 원칙)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p><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            5.1 (이사 후보 투표 원칙)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li> </ul>
변경 · 보완	<p><u>II. 이사·감사</u>            6. 이사 선임            6.1.2 (이사 후보의 경합시의 투표 원칙)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이사 후보 중 일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p><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            5.1.1 (이사 후보 경합 시의 투표 원칙)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이사 후보 중 일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등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li>- 경합 시의 세부적 판단 방향성 및 목적 제시</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II. 이사·감사</b></p> <p>6. 이사 선임</p> <p>6.3 (이사 임기구조 변경) 이사의 임기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에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p> <p>5.8 (이사 임기구조 변경) 이사의 임기 구조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이사회에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안건에는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li>- 개정 전 II-2.3과 통합하여 개정안 I-5.8 확대 정비</li> </ul>
변경 · 보완	<p><b>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2. 성과 보상</p> <p>2.2.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반대한다. 단, 증자, 소각,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p>	<p><b>II. 임원 보수</b></p> <p>2. 성과 보상</p> <p>2.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수량 조정 및 조건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사후적으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p> <p>②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p> <p>③ 사후적으로 가득기간 및 행사기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p> <p>단, 증자, 소각,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서술식 → 번호식)</li> <li>- 가득기간 및 행사기간 조정에 대한 기준 추가</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1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1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취득 목적 및 필요성, 취득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호 변경</li> <li>- 기존 V-41 및 V-41.1 조항을 개정안 IV-5.1로 통합</li> </ul>
삭제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1.1 (경영권 보호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회사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V-41 및 V-41.1 조항을 개정안 IV-5.1로 통합</li> </ul>
변경 · 보완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1.2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 보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5 (자기주식 관련 결과 보고 및 공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내역, 자기주식 관련 계획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공시 → 공개)</li> <li>- 자기주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유도</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V. 자본구조</b></p> <p>4. 자기주식</p> <p>4.2.1 (자기주식 처분의 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V. 자본구조</b></p> <p>5. 자기주식</p> <p>5.4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p> <p>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p> <p>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구체화</li> </ul>
변경 · 보완	<p><b>VI. 기업구조조정</b></p> <p>1. 인수합병</p> <p>1.1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인수합병) 인수합병의 안에 대해서는 합병 대금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기업구조개편</p> <p>1.1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기업구조개편) 다음의 기업구조개편 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방식의 적절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p>① 합병</p> <p>② 분할 및 분할합병</p> <p>③ 영업양수도 혹은 그에 준하는 핵심자산 거래</p> <p>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공시 → 공개)</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li>-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1. <u>인수합병</u></p> <p>1.1.1 (<u>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인수합병</u>)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u>인수합병</u>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u>기업구조개편</u></p> <p>1.1.1 (<u>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기업구조개편</u>)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u>기업구조개편</u> 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1. <u>인수합병</u></p> <p>1.1.2 (<u>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인수합병</u>) 회사 임직원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u>인수합병</u>의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u>기업구조개편</u></p> <p>1.1.2 (<u>사적 이익 추구 목적 기업구조개편</u>) 회사 임직원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u>기업구조개편</u> 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삭제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u>분할 및 분할합병</u></p> <p>2.1 (<u>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분할합병</u>) 분할·분할합병의 안건에 대해서는 분할의 필요성, 분할방식의 적절성, 주주 권리 보호 방안 등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분할 및 분할합병</p> <p>2.1.1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분할·분할합병)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하려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기업구조개편</p> <p>1.1.3 (경영권 승계 목적 기업구조개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기업구조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li>- '경영권 방어' 관련 내용은 개정안 V-3.1으로 통합</li> </ul>
삭제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분할 및 분할합병</p> <p>2.2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영업양수도 등) 영업양수도 혹은 그에 준하는 핵심 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삭제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분할 및 분할합병</p> <p>2.3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VI. 기업구조조정</b></p> <p>4. 경영권 방어 장치</p> <p>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p> <p>(중략)</p> <p>⑦ 경영권 방어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발행주식수 증가, 자기주식 매각 등</p>	<p><b>V. 기업구조</b></p> <p>3. 경영권 방어 장치</p> <p>3.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p> <p>(중략)</p> <p>⑦ 경영권 방어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발행주식수 증가, <u>기업구조개편</u>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자기주식 매각을 기업구조개편으로 변경(⑦)</li> </ul>
자구 수정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p> <p>1.5 (주주제안)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u>제안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이해상충 여부, 주주권리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u></p>	<p><b>III. 주주의 권리</b></p> <p>1. <u>주주제안</u></p> <p>1.1 (주주제안)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u>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u></p> <p>① <u>안건의 적법성</u></p> <p>② <u>제안의 타당성</u></p> <p>③ <u>이해상충 여부</u></p> <p>④ <u>그 밖에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서술식 → 번호식)</li> <li>-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li> </ul>
자구 수정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p> <p>1.5.1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근로자 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 노사관계, 위임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회사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p>	<p><b>III. 주주의 권리</b></p> <p>1. <u>주주제안</u></p> <p>1.1.1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근로자 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 노사관계, 위임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p> <p>1.5.3 (기후리스크 대응 정보 공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등 기후리스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p><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p> <p>5. <u>비재무정보 공개</u></p> <p>5.1.1 (환경경영 정보 공개) 환경경영 거버넌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등 환경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환경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li> </ul>
변경 · 보완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4. <u>의결권 행사</u></p> <p>4.4.2 (완전전자주주총회) 현장형 주주총회나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금지하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p> <p>* 전자주주총회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정부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p>	<p><b>III. 주주의 권리</b></p> <p>4. <u>주주총회</u></p> <p>4.7.4 (병행전자주주총회)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개정 상법 반영</li> </ul>
신설	(신설)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p> <p>1.5 (이사회 결의요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사안에 과도한 결의요건을 적용하여 이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u>1. 이사회 구성 및 운영</u> <u>1.7 (이사회규정 제정 및 공개) 이사회의 구성, 권한, 책임, 운영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을 담은 이사회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	- 이사회규정을 제정 및 공개하는 안에 관한 조항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u>2. 이사회 내 위원회</u> <u>2.3.1 (위원회 내 독립이사 비중 축소) 위원회 내 독립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	-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확대안(I-2.3)과 축소안을 구분하기 위하여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u>2. 이사회 내 위원회</u> <u>2.4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 기한 단축) 위원회 소집 통지 기한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	-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u>3. 감사기구</u> <u>3.4 (감사위원회 폐지 및 감사 선임)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를 선임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	-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를 선임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신설)	<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 3. 감사기구 3.5 (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 비상근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 3. 감사기구 3.6 (감사 수 변경) 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찬성한다.	- 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b>II. 임원 보수</b> 1. 이사·감사의 보수 1.5 (보수체계 주주총회 승인) 보수체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주주총회에서 보수체계를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관한 조항 신설
신설	(신설)	<b>III. 주주의 권리</b> 3. 주주소통 3.2 (기업설명회) 정기적으로 공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빈번한 개최 빈도 설정 등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기업설명회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신설	(신설)	<b>IV. 자본구조</b> 3. 준비금 3.2 (준비금 감소) 상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신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1.1 (자기주식 보유, 처분 또는 소각 계획 공개 및 승인) 자기주식의 취득 시에 자기주식 보유, 처분 또는 소각에 관한 계획을 공개하고, 이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미리 보유처분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에 관한 조항 신설
신설	(신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① 과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이행 여부 ② 자기주식 외 대안 검토 ③ 자기주식 보유 목적과 필요성 ④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처분의 목적, 규모, 가격, 대상 등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조항 신설
신설	(신설)	<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 5. 비재무정보 공개 5.1.2 (안전보건 정보 공개) 안전보건 거버넌스, 안전보건 관련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현황, 재해 발생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조항 신설

##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전체 신규대조표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제정배경 및 목적]</b> 한국ESG기준원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회사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p> <p><b>[원칙]</b> 기업의 장기적인 회사가치 제고</p> <p><b>[규정 범위]</b> 둘째, 이 가이드라인이 공론화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제고라는 기본원칙상 (중략)</p>	<p><b>[제·개정배경 및 목적]</b> 한국ESG기준원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회사가치 <u>및 주주권</u>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p> <p><b>[원칙]</b> 기업의 장기적인 회사가치 <u>및 주주권</u>의 제고</p> <p><b>[규정 범위]</b> 둘째, 이 가이드라인이 공론화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치 <u>및 주주권의</u> 제고라는 기본원칙상 (중략)</p>	<p>-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일러두기]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가이드라인 각 규정에서 말하는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외에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사실상 이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li> </ul> <p>(신설)</p>	<p>[일러두기]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외에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사실상 이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특수관계인</u>’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계열회사</u>’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공개</u>’는 관련 법규에 따른 ‘<u>공시</u>’를 포함하는 개념이다.</li> <li>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u>독립이사</u>’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2026. 7. 23.) 전까지 ‘<u>사외이사</u>’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용어 정비 적용시점을 명시</li> <li>기타 자구 수정</li> </ul>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1 (이사회 규모 변경)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1 (이사회 규모 변경) (중략)	- 제목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2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2 (이사회내 독립이사 비중) 이사회내 독립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제목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중략)	- 제목 변경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3.1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3.1 (독립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3.2 (선임사외이사 도입)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3.2 (선임독립이사 도입)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선임독립이사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3.3 (상무담당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3.3 (상무담당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중략)	- 제목 변경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중략)	- 제목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4.1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4.1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 (중략)	- 제목 변경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4.2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이력) 이사회 의장 또는 <u>사외이사</u>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위반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4.2 (성별 구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이력) 이사회 의장 또는 <u>독립이사</u>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위반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제목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5 (이사회 소집 기한 단축)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6 (이사회 소집 기한 단축)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1. <u>이사회</u> 1.6 (이사회 평가 정보 공개)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u>이사회 구성 및 운영</u> 1.8 (이사회 평가 정보 공개)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2. <u>감사위원회</u> 2.1 (감사위원회 설치) (중략)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3. <u>감사기구</u> 3.1 (감사위원회 설치)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변경·보완	I.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2. <u>감사위원회</u> 2.2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감사위원회의 <u>사외이사</u>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I.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3. <u>감사기구</u> 3.2 (감사위원회 독립이사 비중) 감사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에 찬성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 전원 독립이사를 원칙으로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3. <u>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u> 3.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중략)	1.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2. <u>이사회 내 위원회</u> 2.1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3. <u>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u> 3.2 (위원회규정 마련 및 공시)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 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u>마련</u> 하고 <u>공시</u>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1.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2. <u>이사회 내 위원회</u> 2.2 (위원회규정 제정 및 공개)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 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u>제정</u> 하고 <u>공개</u>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 단순 자구수정(마련 → 제정)
변경·보완	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3. <u>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u> 3.3 (사외이사 구성 비율) 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1. <u>이사회 및 감사기구</u> 2. <u>이사회 내 위원회</u> 2.3 (이사회 내 위원회 독립성)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을 독립이사로,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삭제	1. <u>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u> 4.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4.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삭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            4.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5. 보상위원회</u>            5.1 (보상위원회 위원 구성) 보상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6. 내부거래위원회</u>            6.1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상법에 따라 규제되는 이사, 주요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이하 총칭하여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개정안 I-2.3이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를 전제로 하도록 개정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삭제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6. 내부거래위원회</u>            6.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구성)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삭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이사 비중 관련사항을 개정안 I-23으로 통합
자구 수정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6. 내부거래위원회</u>            6.3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p>	<p><u>Ⅲ. 주주의 권리</u>            4. 주주총회            4.8 (내부거래 주주총회 승인) (중략)</p>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p><u>I.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u>  <u>6. 내부거래위원회</u>            6.4 (내부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기준) 내부거래 승인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① 거래의 성격과 거래금액            ② 거래조건의 적정성            ③ 거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u>사외이사</u>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p>	<p><u>Ⅲ. 주주의 권리</u>            4. 주주총회            4.8.1 (내부거래 주주총회 승인 기준) 내부거래 승인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① 거래의 성격과 거래금액            ② 거래조건의 적정성            ③ 거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u>독립이사</u>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p>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II. 이사·감사</b></p> <p><b>1. 이사</b></p> <p>1.1 (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p> <p>③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p> <p>④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의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p> <p>⑤ 과도하거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겸임으로 인하여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p> <p>⑥ 이사 재선임(연속적, 비연속적 여부를 불문한다)의 경우에 있어 해당 회사의 직전 임기 동안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p> <p>⑦ 명백한 회사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체계 구축 또는 운영 등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p> <p>⑧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4. 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p> <p>4.1 (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p> <p>③ 명백한 회사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체계 구축 또는 운영 등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p> <p>④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p> <p>⑤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의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p> <p>⑥ 과도하거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겸임으로 인하여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p> <p>⑦ 이사 재선임(연속적, 비연속적 여부를 불문한다)의 경우에 있어 해당 회사에서의 직전 임기 동안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p> <p>⑧ 그 밖에 회사가치 훼손,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순서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1. 이사</p> <p>1.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6. 이사의 책임 및 의무</p> <p>6.1 (이사 손해배상책임 감면) (중략)</p>	<p>- 제목 및 번호 변경</p>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2. 사외이사</p> <p>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u>사외이사</u>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II-1.1의 이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p> <p>⑤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 회사·비영리법인에 <u>사외이사</u>직 외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p> <p>⑥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u>사외이사</u>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의 합이 6년을 초과하는 자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재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p> <p>⑦ 그 밖에 <u>사외이사</u>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4. 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p> <p>4.3 (독립이사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u>독립이사</u>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I-4.1의 이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p> <p>⑤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열 회사·비영리법인에 <u>독립이사</u>직 외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p> <p>⑥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u>독립이사</u>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의 합이 6년을 초과하는 자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재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p> <p>⑦ 그 밖에 <u>독립이사</u>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p>	<p>- 제목 및 번호 변경</p> <p>-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p> <p>- 단순 자구수정(타 조항 번호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2. 사외이사</p> <p>2.1.1 (사외이사의 전문성 요건) 다음 예시와 같이 경제·경영·법률·회계·산업 등 회사 경영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한다.</p> <p>(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4. 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p> <p>4.4 (독립이사 전문성 요건) 다음 예시와 같이 경제·경영·법률·회계·산업 등 회사 경영 및 독립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독립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한다.</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2. 사외이사</p> <p>2.2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공시)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4. 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p> <p>4.7 (독립이사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독립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공시 → 공개, 사외이사 → 독립이사)</li> </ul>
삭제	<p><b>II. 이사·감사</b></p> <p>2. 사외이사</p> <p>2.3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전 II-6.3과 통합하여 개정안 I-5.8 확대 정비</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3. 대표이사</p> <p>3.1 (대표이사 후보의 전문성 등 판단 기준)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4. 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p> <p>4.2 (대표이사 후보 판단 기준)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3. 대표이사</p> <p>3.1.1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판단 기준)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p> <p>5.5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판단 기준)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u>II. 이사·감사</u> 3. <u>대표이사</u> 3.2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 (중략)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 5.9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II. 이사·감사</u> 3. <u>대표이사</u> 3.3 ( <u>경영승계 규정 공시</u> ) 경영승계 담당 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u>공시</u>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 5.10 ( <u>경영승계 규정 공개</u> ) 경영승계 담당 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u>공개</u>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자구 수정	<u>II. 이사·감사</u> 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 4.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① <u>II-1.1</u> 의 이사 결격사유 또는 <u>II-2.1</u> 의 <u>사외이사</u>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u>II-2.1.1</u> 의 <u>사외이사</u>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략)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4. <u>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u> 4.5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결격사유)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① <u>I-4.1</u> 의 이사 결격사유 또는 <u>I-4.3</u> 의 <u>독립이사</u>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u>I-4.4</u> 의 <u>독립이사</u>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 단순 자구수정(타 조항 번호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p> <p>4.2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u>사외이사</u>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u>사외이사</u>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4. <u>이사감사의 자격과 독립성</u></p> <p>4.6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u>독립이사</u>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u>독립이사</u>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p> <p>4.3 (감사위원 후보 추천)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u>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6 (감사위원 후보 추천)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u>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p> <p>4.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7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p> <p>4.4.1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법률 위반)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7.1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법률 위반)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p> <p>4.4.2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이력) 이사회 의장 또는 <u>사외</u> 이사후보추천위원회(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후보에 대해서는 위반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7.2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이력) 이사회 의장 또는 <u>독립</u> 이사후보추천위원회(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후보에 대해서는 위반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 이사로 선임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4. <u>감사·감사위원회 위원</u></p> <p>4.4.3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 수)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적용받는 이사의 수를 <u>증가</u>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3. <u>감사기구</u></p> <p>3.3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 수)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적용받는 이사의 수를 <u>증가</u>시키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하는 → 시키는)</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5. <u>집행임원</u></p> <p>5.1 (집행임원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7. <u>집행임원</u></p> <p>7.1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u>폐지</u>하는 안에 대해 <u>이사회</u>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시·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반대</u>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집행임원제도 폐지에 대한 판단 기준 추가</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5. 집행임원</p> <p>5.2 (집행임원 세부 규정 공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7. 집행임원</p> <p>7.2 (집행임원 세부 규정 공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공시 → 공개)</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6. 이사 선임</p> <p>6.1 (이사 후보 투표 원칙)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p> <p>5.1 (이사 후보 투표 원칙) 이사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 및 <u>주주권익</u>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6. 이사 선임</p> <p>6.1.1 (이사 선임 방법)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p> <p>5.2 (이사 후보 경합 시의 표결 방식)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변경·보완	<p><b>II. 이사·감사</b></p> <p>6. 이사 선임</p> <p>6.1.2 (이사 후보의 경합시의 투표 원칙)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이사 후보 중 일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u>중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u>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p> <p>5.1.1 (이사 후보 경합 시의 투표 원칙)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이사 후보 중 일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u>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등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u>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띠어쓰기)</li> <li>- 경합 시의 세부적 판단 방향성 및 목적 제시</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6. <u>이사 선임</u></p> <p>6.2 (다수의 이사후보 투표 방식) 이사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u>이사후보를 묶어 일괄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u></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3 (다수의 이사 후보 투표 방식) 이사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u>이사 후보를 묶어 일괄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ul>
변경·보완	<p><b>II. 이사·감사</b></p> <p>6. <u>이사 선임</u></p> <p>6.3 (이사 임기구조 변경) <u>이사의 임기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u>의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한다.</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8 (이사 임기구조 변경) <u>이사의 임기구조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이사회</u>의 책임을 저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안건에는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li>- 개정 전 II-2.3과 통합하여 개정안 I-5.8 확대 정비</li> </ul>
자구 수정	<p><b>II. 이사·감사</b></p> <p>6. <u>이사 선임</u></p> <p>6.4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중략)</p>	<p><b>I. 이사회 및 감사기구</b></p> <p>5. <u>이사의 선임방식 및 임기</u></p> <p>5.4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자구 수정	<p><b>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1. <u>이사·감사의 보수</u></p> <p>1.1 (이사 보수 한도 수준) <u>이사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u>의 규모, 경영 성과, 보수 지급의 성과연동성, 실지급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한다.</p>	<p><b>II. 임원 보수</b></p> <p>1. <u>이사·감사의 보수</u></p> <p>1.1 (이사 보수 한도 수준) <u>이사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u>의 규모, 경영 성과, 보수 지급의 성과연동성, 실지급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을 → 를)</li> </ul>
자구 수정	<p><b>III.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1. <u>이사·감사의 보수</u></p> <p>1.2 (이사 보수의 주식 지급) <u>이사의 현금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p><b>II. 임원 보수</b></p> <p>1. <u>이사·감사의 보수</u></p> <p>1.2 (이사 보수의 주식 지급) <u>이사의 현금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띄어쓰기)</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1. 이사·감사의 보수 1.2.1 (주식보상 처분 제한 조건) (중략)	<b>Ⅱ. 임원 보수</b> 1. 이사·감사의 보수 1.2.1 (주식보상 처분 제한 조건)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변경 · 보완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1. 이사·감사의 보수 1.3 (임원별 보수 공시 확대) 보상 한도, 내역 및 체계 등의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b>Ⅱ. 임원 보수</b> 1. 이사·감사의 보수 1.3 (임원별 보수 정보 확대 공개) 보수 한도, 내역 및 체계 등 임원 <u>보수에 관한 정보</u> 를 임원별로 확대 공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및 문구 정비(공시 → 공개) - 단순 자구수정(보상 → 보수)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1. 이사·감사의 보수 1.3.1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 보수가 5억원 미만이라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은 일정 수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b>Ⅱ. 임원 보수</b> 1. 이사·감사의 보수 1.3.1 (개별 임원 보수 공개 확대) 보수가 5억원 미만이라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은 일정 수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거나,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1. 이사·감사의 보수 1.3.2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개별 임원 보수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 임원에게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	<b>Ⅱ. 임원 보수</b> 1. 이사·감사의 보수 1.3.2 (미등기임원 보수 공개) 개별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및 문구 정비(공시 → 공개)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1. 이사·감사의 보수 1.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시) (중략)	<b>Ⅱ. 임원 보수</b> 1. 이사·감사의 보수 1.3.3 (최대주주 등의 보수총액 공개)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3.4 (보상 내역·기준 상세 공시) 보상 체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u>공시</u>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li> <li>·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등)</li> <li>·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li> <li>·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성과 측정 지표, 성과급 지급 금액 산출 방식, 지급 한도 등) (중략)</li> </ul>	<p><b>Ⅱ. 임원 보수</b></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3.4 (보수 내역·기준 상세 공개) 보수 체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u>공개</u>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li> <li>·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등)</li> <li>·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li> <li>·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성과 측정 지표, 성과급 지급 금액 산출 방식, 지급 한도 등) (중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용어 정비(공시 → 공개)</li> <li>- 단순 자구수정(보상 → 보수)</li> </ul>
자구 수정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4 (감사 보수 한도 수준) (중략)</p>	<p><b>Ⅱ. 임원 보수</b></p> <p>1. 이사·감사의 보수</p> <p>1.4 (감사 보수 한도 수준)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자구 수정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2. 성과 보상</p> <p>2.1 (무조건적인 성과급 지급) (중략)</p>	<p><b>Ⅱ. 임원 보수</b></p> <p>2. 성과 보상</p> <p>2.1 (무조건적인 성과급 지급)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자구 수정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2. 성과 보상</p> <p>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중략)</p>	<p><b>Ⅱ. 임원 보수</b></p> <p>2. 성과 보상</p> <p>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2. 성과 보상</p> <p>2.2.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반대한다. 단, 증자, 소각,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p>	<p><b>Ⅱ. 임원 보수</b></p> <p>2. 성과 보상</p> <p>2.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수량 조정 및 조건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p> <p>① 사후적으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p> <p>②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p> <p>③ 사후적으로 가득기간 및 행사기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p> <p>단, 증자, 소각,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서술식 → 번호식)</li> <li>- 가득기간 및 행사기간 조정에 대한 기준 추가</li> </ul>
자구 수정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2. 성과 보상</p> <p>2.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p>	<p><b>Ⅱ. 임원 보수</b></p> <p>2. 성과 보상</p> <p>2.2.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자구 수정	<p><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p> <p>2. 성과 보상</p> <p>2.3 (성과연동형 보상의 지급 기준) (중략)</p>	<p><b>Ⅱ. 임원 보수</b></p> <p>2. 성과 보상</p> <p>2.3 (성과연동형 보상 지급 기준)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2. 성과 보상 2.3.1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한 성과 측정 기준) (중략)	<b>Ⅱ. 임원 보수</b> 2. 성과 보상 2.3.1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한 성과 측정 기준)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2. 성과 보상 2.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중략)	<b>Ⅱ. 임원 보수</b> 2. 성과 보상 2.4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2. 성과 보상 2.5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회피 방지) (중략)	<b>Ⅱ. 임원 보수</b> 2. 성과 보상 2.5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회피 방지)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2. 성과 보상 2.6 (성과연동보상 이연지급) (중략)	<b>Ⅱ. 임원 보수</b> 2. 성과 보상 2.6 (성과연동보상 이연지급)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2. 성과 보상 2.7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b>Ⅱ. 임원 보수</b> 2. 성과 보상 2.7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2. 성과 보상 2.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사외이사에게 성과와 연계된 보상(성과급,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b>Ⅱ. 임원 보수</b> 2. 성과 보상 2.8 (독립이사에 대한 성과연동보상) 독립이사에게 성과연동보상(성과급, 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연계 → 연동 및 띄어쓰기)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3. 퇴직보상 3.1 (퇴직보상금) (중략)	<b>Ⅱ. 임원 보수</b> 3. 퇴직 보상 3.1 (퇴직보상금)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3. 퇴직보상 3.1.1 (경영진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 (중략)	<b>Ⅱ. 임원 보수</b> 3. 퇴직 보상 3.1.1 (경영진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3. 퇴직보상 3.2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신수준, 퇴직금 지급 규정 결정 과정, 퇴직금 지급 결정 주체, 황금낙하산 조항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과도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반대한다.	<b>Ⅱ. 임원 보수</b> 3. 퇴직 보상 3.2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 수준, 퇴직금 지급 규정 결정 과정, 퇴직금 지급 결정 주체, 황금낙하산 조항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과도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반대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자구 수정	<b>Ⅲ. 임원 보수·성과 보상</b> 3. 퇴직보상 3.3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사외이사에게 퇴직혜택(퇴직위로금 등)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b>Ⅱ. 임원 보수</b> 3. 퇴직 보상 3.3 (독립이사에 대한 퇴직혜택) 독립이사에게 퇴직혜택(퇴직위로금 등)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사외이사 → 독립이사)
자구 수정	<b>Ⅳ. 재무제표·배당</b> 1. 재무제표 1.1 (재무제표의 승인) (중략)	<b>Ⅵ.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 3. 재무제표 3.1 (재무제표 승인)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Ⅳ. 재무제표·배당</b> 2. 외부감사 2.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 (중략)	<b>Ⅵ.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 4. 외부감사 4.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결정)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2. 외부감사 2.2 (감사 이외의 자문서비스) (중략)	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 4. 외부감사 4.2 (감사 이외의 자문서비스)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3. 배당 3.1 (배당금 지급) (중략)	IV. 자본구조 4. 배당 4.1 (배당금 지급)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3. 배당 3.2 (중간·분기 배당) (중략)	IV. 자본구조 4. 배당 4.2 (중간·분기 배당)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3. 배당 3.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중략)	IV. 자본구조 4. 배당 4.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3. 배당 3.4 (배당정책 마련 및 공시) 주주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당을 회사 성과 및 재무 상황과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IV. 자본구조 4. 배당 4.4 (배당정책 마련 및 공개) 주주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당을 회사 성과 및 재무 상황과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3. 배당 3.5 (현물배당) (중략)	IV. 자본구조 4. 배당 4.5 (현물배당)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IV. 재무제표·배당 3. 배당 3.6 (배당의 예측 가능성) (중략)	IV. 자본구조 4. 배당 4.6 (배당의 예측 가능성)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V. 자본구조 1. 자본증가 1.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중략)	IV. 자본구조 1. 자본금 증가 1.1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1. <u>자본증가</u> 1.2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중략)	<u>IV. 자본구조</u> 3. <u>준비금</u> 3.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1. <u>자본증가</u> 1.3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 제한) (중략)	<u>IV. 자본구조</u> 1. <u>자본금 증가</u> 1.2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 제한)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1. <u>자본증가</u> 1.3.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 (중략)	<u>IV. 자본구조</u> 1. <u>자본금 증가</u> 1.2.1 (신주의 제3자 배정 기준)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1. <u>자본증가</u> 1.4 (채무재조정 목적의 신주발행) (중략)	<u>IV. 자본구조</u> 1. <u>자본금 증가</u> 1.3 (채무재조정 목적 신주 발행)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1. <u>자본증가</u> 1.5 (신주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	<u>IV. 자본구조</u> 1. <u>자본금 증가</u> 1.4 (신주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1. <u>자본증가</u> 1.6 (실권주 배정)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임직원, <u>사외이사</u> 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u>IV. 자본구조</u> 1. <u>자본금 증가</u> 1.5 (실권주 배정)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임직원, <u>독립이사</u> 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 용어 정비(사외이사→ 독립이사)
자구 수정	<u>V. 자본구조</u> 2. <u>종류주식</u> 2.1 (종류주식 발행) (중략)	<u>IV. 자본구조</u> 1. <u>자본금 증가</u> 1.6 (종류주식 발행)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자본증가 → 자본금 증가)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V. 자본구조</b></p> <p>3. 자본금 감소</p> <p>3.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p> <p>①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p> <p>②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p> <p>③ 회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p> <p>④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u>주주가치</u>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p>	<p><b>IV. 자본구조</b></p> <p>2. 자본금 감소</p> <p>2.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p> <p>①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p> <p>②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p> <p>③ 회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p> <p>④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u>주주권익</u>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단순 자구수정(주주가치 → 주주권익)</li> </ul>
자구 수정	<p><b>V. 자본구조</b></p> <p>3. 자본금 감소</p> <p>3.2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향상을 위한 무상감자) (중략)</p>	<p><b>IV. 자본구조</b></p> <p>2. 자본금 감소</p> <p>2.2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향상을 위한 무상감자)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변경 · 보완	<p><b>V. 자본구조</b></p> <p>4. 자기주식</p> <p>4.1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u>과거</u>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u>한해</u> 찬성한다.</p>	<p><b>IV. 자본구조</b></p> <p>5. 자기주식</p> <p>5.1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u>취득</u> 목적 및 필요성, 취득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호 변경</li> <li>- 기존 V-41 및 V-41.1 조항을 개정안 IV-5.1로 통합</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삭제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1.1 (경영권 보호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회사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삭제)	- 기존 V-41 및 V-41.1 조항을 개정안 IV-5.1로 통합
변경 · 보완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1.2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 보고)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5 (자기주식 관련 결과 보고 및 공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내역, 자기주식 관련 계획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 자기주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유도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2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처분방법) (중략)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3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처분방법) (중략)	- 번호 변경
변경 · 보완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2.1 (자기주식 처분의 주주총회 승인)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4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	-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구체화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4. 자기주식 4.3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임직원대출)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b>IV. 자본구조</b> 5. 자기주식 5.6 (자기주식 매수를 위한 임직원대출) 자기주식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 번호 변경 - 단순 자구 수정('의' 삭제)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5. 사채 5.1 (주식연계채권 발행) (중략)	<b>IV. 자본구조</b> 6. 사채 6.1 (주식연계채권 발행) (중략)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5. 사채 5.2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중략)	<b>IV. 자본구조</b> 6. 사채 6.2 (특정 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중략)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5. 사채 5.2.1 (파산방지를 위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 (중략)	<b>IV. 자본구조</b> 6. 사채 6.2.1 (파산방지를 위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 (중략)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5. 사채 5.3 (주식연계채권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	<b>IV. 자본구조</b> 6. 사채 6.3 (주식연계채권 발행의 주주총회 승인) (중략)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5. 사채 5.4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중략)	<b>IV. 자본구조</b> 6. 사채 6.4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중략)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6. 주식분할·병합 6.1 (비례적 주식분할) (중략)	<b>IV. 자본구조</b> 7. 주식분할·병합 7.1 (비례적 주식분할) (중략)	- 번호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6. 주식분할·병합 6.2 (비례적 주식병합) (중략)	<b>IV. 자본구조</b> 7. 주식분할·병합 7.2 (비례적 주식병합) (중략)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 자본구조</b> 6. 주식분할·병합 6.2.1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중략)	<b>IV. 자본구조</b> 7. 주식분할·병합 7.2.1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중략)	- 번호 변경
변경 · 보완	<b>VI. 기업구조조정</b> 1. 인수합병 1.1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인수합병) 인수합병의 안에 대해서는 합병 대금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	<b>V. 기업구조</b> 1. 기업구조개편 1.1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기업구조개편) 다음의 기업구조개편 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방식의 적절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 ① 합병 ② 분할 및 분할합병 ③ 영업양수도 혹은 그에 준하는 핵심자산 거래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제목 및 번호 변경 - 용어 정비(공시 → 공개) -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 -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1. <u>인수합병</u></p> <p>1.1.1 (<u>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인수합병</u>)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u>인수합병</u>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u>기업구조개편</u></p> <p>1.1.1 (<u>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기업구조개편</u>)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개입된 <u>기업구조개편</u> 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1. <u>인수합병</u></p> <p>1.1.2 (<u>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인수합병</u>) 회사 임직원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u>인수합병</u>의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u>기업구조개편</u></p> <p>1.1.2 (<u>사적 이익 추구 목적 기업구조개편</u>) 회사 임직원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u>기업구조개편</u> 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삭제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u>분할 및 분할합병</u></p> <p>2.1 (<u>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분할합병</u>) 분할·분할합병의 안건에 대해서는 분할의 필요성, 분할방식의 적절성, 주주 권리 보호 방안 등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분할 및 분할합병</p> <p>2.1.1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분할·분할합병)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하려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p>	<p><b>V. 기업구조</b></p> <p>1. 기업구조개편</p> <p>1.1.3 (경영권 승계 목적 기업구조개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기업구조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li>- '경영권 방어' 관련 내용은 개정안 V-3.1으로 통합</li> </ul>
삭제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분할 및 분할합병</p> <p>2.2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영업양수도 등) 영업양수도 혹은 그에 준하는 핵심 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삭제	<p><b>VI. 기업구조조정</b></p> <p>2. 분할 및 분할합병</p> <p>2.3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치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 반대한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되어 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조항을 통합</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3. 상장폐지</p> <p>3.1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 결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반대한다.</p> <p>① 소액주주에게 공식적인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p> <p>②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목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p> <p>③ 기존 주주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p>	<p><b>V. 기업구조</b></p> <p>2. 상장폐지</p> <p>2.1 (자진 상장폐지 결의) 회사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반대한다.</p> <p>① 소액주주에게 공식적인 이의신청권이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p> <p>②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목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p> <p>③ 기존 주주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p>	<p>- 제목 및 번호 변경</p> <p>- 용어 정비(공시 → 공개)</p>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3. 상장폐지</p> <p>3.2 (소속시장 변경 사유의 조건부 상장폐지) (중략)</p>	<p><b>V. 기업구조</b></p> <p>2. 상장폐지</p> <p>2.2 (소속시장 변경 사유의 조건부 상장폐지) (중략)</p>	<p>- 제목 및 번호 변경</p>
자구 수정	<p><b>VI. 기업구조조정</b></p> <p>4. 경영권 방어 장치</p> <p>4.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p> <p>(중략)</p> <p>⑦ 경영권 방어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발행주식수 증가, 자기주식 매각 등</p>	<p><b>V. 기업구조</b></p> <p>3. 경영권 방어 장치</p> <p>3.1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 다음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p> <p>(중략)</p> <p>⑦ 경영권 방어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발행주식수 증가, <u>기업구조개편</u> 등</p>	<p>- 제목 및 번호 변경</p> <p>- 자기주식 매각을 기업구조개편으로 변경(⑦)</p>
자구 수정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1. 주주총회의 소집·결의</p> <p>1.1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변경) (중략)</p>	<p><b>III. 주주의 권리</b></p> <p>4. 주주총회</p> <p>4.7.1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변경) (중략)</p>	<p>- 제목 및 번호 변경</p>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2 ( <u>주주총회 일시·장소의 변경</u> ) (중략)	<b>III. 주주의 권리</b> 4. <u>주주총회</u> 4.7.2 ( <u>주주총회 일시·장소 변경</u> )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3 ( <u>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u> ) (중략)	<b>III. 주주의 권리</b> 2. <u>주주권 제한</u> 2.2 ( <u>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변경</u> )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4 ( <u>의결주체의 변경</u> ) (중략)	<b>III. 주주의 권리</b> 4. <u>주주총회</u> 4.1 ( <u>의결주체 변경</u> )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4.1 ( <u>주주총회 결의사항 확대</u> ) (중략)	<b>III. 주주의 권리</b> 4. <u>주주총회</u> 4.1.1 ( <u>주주총회 결의사항 확대</u> )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변경 · 보완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5 ( <u>주주제안</u> )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이해상충 여부, 주주권리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회사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	<b>III. 주주의 권리</b> 1. <u>주주제안</u> 1.1 ( <u>주주제안</u> )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 ① <u>안건의 적법성</u> ② <u>제안의 타당성</u> ③ <u>이해상충 여부</u> ④ <u>그 밖에 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u>	- 제목 및 번호 변경 - 단순 자구수정(서술식 → 번호식) -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5.1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근로자 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 노사관계, 위임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회사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	<b>III. 주주의 권리</b> 1. <u>주주제한</u> 1.1.1 (근로자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근로자 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 노사관계, 위임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회사가치 및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u>	- 제목 및 번호 변경 - 전체 주주의 권익에 대한 당원의 견해를 명확히 함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5.2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중략)	<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 5. <u>비재무정보 공개</u> 5.1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변경 · 보완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5.3 (기후리스크 대응 정보 공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등 <u>기후리스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u>	<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 5. <u>비재무정보 공개</u> 5.1.1 (환경경영 정보 공개) <u>환경경영 거버넌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전략 등 환경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u>	- 제목 및 번호 변경 - 환경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1. <u>주주총회의 소집·결의</u> 1.6 (주주권 제한) (중략)	<b>III. 주주의 권리</b> 2. <u>주주권 제한</u> 2.1 (주주권 행사 제한)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 2. <u>회사명·회계연도 변경</u> 2.1 (회사명 변경) (중략)	<b>VI. 기타</b> 1. <u>회사명·회계연도 변경</u> 1.1 (회사명 변경)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2. 회사명 · 회계연도 변경 2.2 (회계연도 변경) (중략)	<u>VII. 기타</u> 1. 회사명 · 회계연도 변경 1.2 (회계연도 변경)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3. <u>안전 상정</u> 3.1 (안전 상정 방식)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2 (안전 상정 방식)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3. <u>안전 상정</u> 3.2 (일괄 상정 안전)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2.1 (일괄 상정 안전)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3. <u>안전 상정</u> 3.3 (미공개 안전 처리)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3 (미공개 안전 처리)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4. <u>의결권 행사</u> 4.1 (정족수 변경)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4 (정족수 변경)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4. <u>의결권 행사</u> 4.2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5 (의결권 대리행사자 범위)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4. <u>의결권 행사</u> 4.3 (의결권 대리 증명)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6 (의결권 대리 증명)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4. <u>의결권 행사</u> 4.4 (의결권 행사 방법)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7 (의결권 행사 방법)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자구 수정	<u>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u> 4. <u>의결권 행사</u> 4.4.1 (전자주주총회) (중략)	<u>III. 주주의 권리</u> 4. <u>주주총회</u> 4.7.3 (전자주주총회)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변경 · 보완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4. <u>의결권 행사</u></p> <p>4.4.2 (완전전자주주총회) 현장형 주주총회나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금지하고 전자주주총회만을 개최할 수 있도록 <u>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u></p> <p>* 전자주주총회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정부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p>	<p><b>III. 주주의 권리</b></p> <p>4. <u>주주총회</u></p> <p>4.7.4 (병행전자주주총회)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개정 상법 반영</li> </ul>
자구 수정	<p><b>VII.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b></p> <p>5. <u>주주관여</u></p> <p>5.1 (주주관여 활동) (중략)</p>	<p><b>III. 주주의 권리</b></p> <p>3. <u>주주소통</u></p> <p>3.1 (주주관여 활동)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ul>
자구 수정	<p><b>VIII. 기업내부통제</b></p> <p>1. 지배구조내부규범</p> <p>1.1 (지배구조규범의 제정) 주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u>마련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p><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p> <p>1. 지배구조내부규범</p> <p>1.1 (지배구조규범 제정 및 공개) 주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u>제정 및 공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li> </ul>
자구 수정	<p><b>VIII. 기업내부통제</b></p> <p>2. 준법통제</p> <p>2.1 (준법통제기준 마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u>마련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p><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p> <p>2. 준법통제</p> <p>2.1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공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u>제정 및 공개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및 번호 변경</li> <li>- 준법통제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li> </ul>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자구 수정	<u>VIII. 기업내부통제</u> 2. 준법통제 2.2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선임) (중략)	<u>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u> 2. 준법통제 2.2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 선임) (중략)	- 제목 및 번호 변경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5 (이사회 결의요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사안에 과도한 결의요건을 적용하여 이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7 (이사회규정 제정 및 공개) 이사의 구성, 권한, 책임, 운영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을 담은 이사회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이사회규정을 제정 및 공개하는 안에 관한 조항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3. 감사기구 3.4 (감사위원회 폐지 및 감사 선임)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를 선임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를 선임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3. <u>감사기구</u> 3.5 (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 비상근 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3. <u>감사기구</u> 3.6 (감사 수 변경) 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찬성한다.	- 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2. <u>이사회 내 위원회</u> 2.3.1 (위원회 내 독립이사 비중 축소) 위원회 내 독립이사 비중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확대안(1-2.3)과 축소안을 구분하기 위하여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 이사회 및 감사기구</u> 2. <u>이사회 내 위원회</u> 2.4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 기한 단축) 위원회 소집 통지 기한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안에 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u>II. 임원 보수</u> 1. <u>이사·감사의 보수</u> 1.5 (보수체계 주주총회 승인) 보수체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주주총회에서 보수체계를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관한 조항 신설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신설)	<p><b>Ⅲ. 주주의 권리</b></p> <p>3. <u>주주소통</u></p> <p>3.2 (기업설명회) 정기적으로 공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빈번한 개최 빈도 설정 등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p>	- 기업설명회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신설	(신설)	<p><b>Ⅳ. 자본구조</b></p> <p>3. <u>준비금</u></p> <p>3.2 (준비금 감소) <u>상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신설	(신설)	<p><b>Ⅳ. 자본구조</b></p> <p>5. <u>자기주식</u></p> <p>5.1.1 (자기주식 보유, 처분 또는 소각 계획 공개 및 승인) <u>자기주식의 취득 시에 자기주식 보유, 처분 또는 소각에 관한 계획을 공개하고, 이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u></p>	-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미리 보유처분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에 관한 조항 신설

구분	개정 前	개정(안)	개정 사유
신설	(신설)	<p><b>IV. 자본구조</b></p> <p>5. 자기주식</p> <p>5.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p> <p>① 과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이행 여부</p> <p>② 자기주식 외 대안 검토</p> <p>③ 자기주식 보유 목적과 필요성</p> <p>④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처분의 목적, 규모, 가격, 대상 등</p>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조항 신설
신설	(신설)	<p><b>VI.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b></p> <p>5. 비재무정보 공개</p> <p>5.1.2 (안전보건 정보 공개) 안전보건 거버넌스, 안전보건 관련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현황, 재해 발생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p>	-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조항 신설

끝.